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38075 판결 [매매대금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래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록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6. 28.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이탈리아제 이베코 RCK9 모터홈 캠핑카 검정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8.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카라반'이라 한다)을 강원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져가서 9,000만 원 또는 9,500만 원에 판매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중도금으로 잡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중도금으로 제가 잡을 거니까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11.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의 자동차세를 낼 때가 되었으니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3개월만 주세요. 3개월 안 되면 제가 이제 키바를 감을게요, 그냥. 왜냐면 취득등록세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님 붙으면 넘어가는데 한 사람 있었는데 그때 아, 또 금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입차 금융이 요즘에'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일단 자동차세를 낼 테니 3개월 안에는 정리를 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가 '그렇게 하시죠, 네'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6. 7.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이 사건 카라반을 사무실로 쓰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난 지금 그건 내가 소장품이지'라고 답변하였다.

마. 2023. 8.경 피고의 주문 실수로 검정색상이 아닌 회색의 이 사건 차량이 수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3. 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 사건 카라반의 대금 8,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갑 제6호증 제7면).

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작성일자를 2022. 9. 3.로 소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을 8,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2023. 9.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2. 9. 28.경 피고가 이 사건 카라반을 타에 팔고 지급받은 대금 중 8,5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팔리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카라반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을 인도한 후 2023. 1. 11.경 이 사건 카라반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최고하였고, 피고는 3개월 후인 2023. 4. 11.까지 이 사건 카라반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면 피고가 명의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23. 4. 11까지 이 사건 카라반을 타에 처분하지 못한 이상, 위 합의에 따른 원,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카라반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이 대물변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2023. 8.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인 검정색의 이 사건 차량 인도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지체되게 되었고(이 사건 계약의 체결 이후 1년 2개월 가량 지난 이후에야 회색의 이 사건 차량이 수입된 점에 비추어, 검정색의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하게 1년 2개월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외에 이 사건 카라반으로 대물변제된 중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한 합의해제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달 가량 후 피고의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회사에서 직접 이 사건 카라반을 인수하되, 그러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카라반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구두로 말하였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 사건 카라반이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조건에 상호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23. 9. 16. 인터넷의 'D 카페'에 이 사건 카라반을 7,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업체에서 8,500만 원에 매입을 해 준다고 하였는데, 업체 사정이 생겨 매입을 못하게 되어 할인하여 올립니다.'라며 이 사건 카라반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카라반을 타에 처분하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카라반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판매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라반을 인수하려 하지 않고 이 사건 카라반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카라반을 타에 매도하는 방향으로라도 피고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라반이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는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카라반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원고는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이 사건 카라반을 뜻한다)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인도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해제 합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합의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대응하여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형평의 원칙상 원고의 이 사건 카라반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카라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가 이 사건 카라반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카라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의 매매대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카라반의 소유권이전등록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항쟁하고 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전등록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카라반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이 사건 카라반의 소유권이전등록완료시까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별지